

보도 일시	2023. 1. 25.(수) 12:00 2023. 1. 26.(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1. 25.(수)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2-7412) 주무관 임수훈 (044-202-7475)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 육아휴직자는 13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

< 육아휴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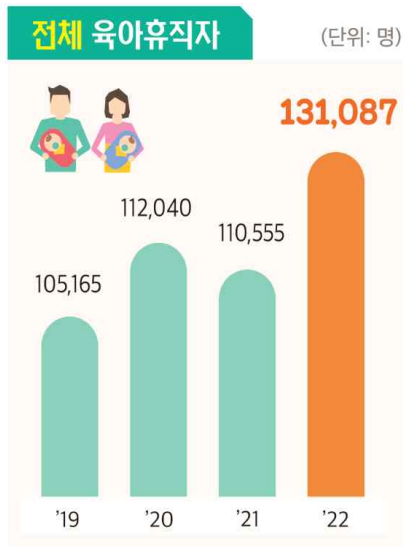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1.2%('19년) → 24.5%('20년) → 26.3%('21년) → 28.9%('22년)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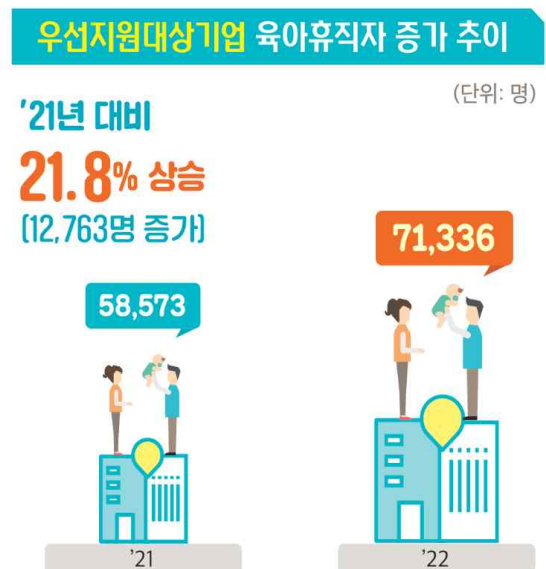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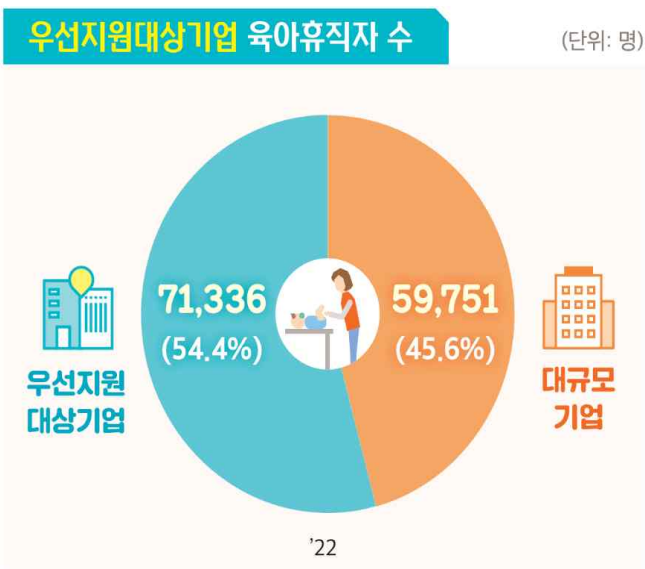
- ▶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상한)
-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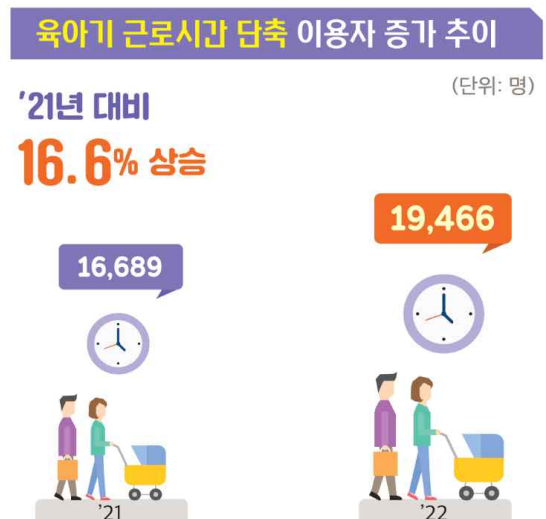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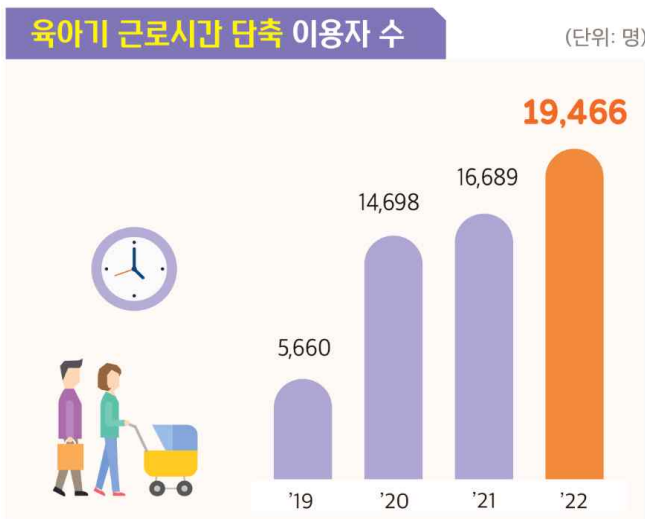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 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통계****① 육아휴직 현황**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2016년	89,771	7,616 (8.5)	82,155 (91.5)
2017년	90,110	12,042 (13.3)	78,068 (86.7)
2018년	99,198	17,665 (17.8)	81,533 (82.2)
2019년	105,165	22,297 (21.2)	82,868 (78.8)
2020년	112,040	27,423 (24.4)	84,617 (75.6)
2021년	110,555	29,041 (26.2)	81,514 (73.8)
2022년	131,087	37,885 (28.9)	93,202 (71.1)

※ 출처: 고용보험 전산망

○ 대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규모 기업	51,281 (48.8)	52,202 (46.6)	51,982 (47.0)	59,751 (45.6)
우선지원 대상기업	53,884 (51.2)	59,838 (53.4)	58,573 (53.0)	71,336 (54.4)
합계	105,165	112,040	110,555	131,087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2016년		378 (13.6)	2,383 (86.4)
2017년		321 (11.3)	2,500 (88.7)
2018년		550 (14.4)	3,270 (85.6)
2019년		742 (13.1)	4,918 (86.9)
2020년		1,639 (11.1)	13,059 (88.9)
2021년		1,632 (9.7)	15,057 (90.3)
2022년		2,001 (10.3)	17,465 (90.7)

※ 출처: 고용보험 전산망

○ 기업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단위: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규모 기업	1,598 (28.3)	5,286 (36.0)	5,615 (33.7)	6,768 (34.8)
우선지원 대상기업	4,062 (71.7)	9,412 (64.0)	11,074 (66.3)	12,698 (65.2)
합계	5,660	14,698	16,689	19,466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